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교육차별에 대한 고찰과 이행과제

이현수

이 연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장애아동의 교육차별에 대한 고찰과 앞으로 이행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난 3년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었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2010년도 교육부부분에서 장애인차별 진정사건의 유형을 살펴보면 수업·시험평가 편의제공 부분(12건, 21.8%)과 시설물 접근 및 이용, 기타(11건, 20%)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와 14조의 교육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의 한계 등에 관한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이행 규정이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법에서 제시한 교육기관에서 물리적 편의지원, 교수-학습지원, 보조원 배치, 취업 및 진로지원 등에 관해 지원체계 구축 수준이 학교가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한계라는 점을 인식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과 재정확보가 필요하다.

주제어: 장애인,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차별, 이행과제

I. 시작하며

장애아동에게 교육은 기본적 인권이자 장애인의 삶의 전반에 걸쳐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기반이지만 그동안 장애인들은 장애를 이유로 교육에서 더욱 소외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장애아동은 장애를 이유로 사회와 교육기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으며 비장애인과 동등한 환경과 수준의 권리를 향유하거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해왔다. 이에 대해 장애아동의 교육권 확대와 더불어 장애의 정도와 특성을 고려한 가장 적절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장애아동은 공교육을 통해 다양성을 인정하고 장애아동 개개인의 장애정도와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등 교육의 다원화를 통한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극대화시키려고 하는데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칭함)이 제정되고 2008년도에 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아동의 교육권에 있어서 차별적인 요소를 줄이고 차별적인 방안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에 특수학교, 특수학급, 장애아전담보육기관 등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보조인력 배치에 의무화 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장애아동들이 교육시설에서 제대로 된 교육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는 실내외에서 이동과 접근이 자유로워야 함은 물론, 교수-학습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각종 보상 체제가 갖추어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교육시설과 교육내용에서 이러한 지원체제를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런 환경이 일부 제한적인 시설·설비의 개선에 그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제10조),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제34조)와 평등권(제11조)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보장은 기본적으로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인간은 교육을 통하여 개인의 잠재적 능력이 개발되며, 인간다운 문화생활과 직업생활의 기초를 마련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인격을 형성하게 하며,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에서의 실질적 평등이 실현되는 것이다.(헌결, 2003) 즉, “교육권은 그 자체가 하나의 인권이 아니라 다른 인권들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수단이다.”(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권리협약 해설집, 2007) 이러한 의미에서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에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장애아동의 교육과 관련된 차별적인 요소의 고찰을 통해 방향성과 이행과제에 대한 시사를 얻고자 한다.

II. 교육환경에서 차별적인 요소

1. 교육부분에서의 차별적인 요소

장애아동을 그동안 교육 환경에서 입학거부나 전학강요, 편의 제공 요청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배제·거부 등을 당해왔다. 또 장애인관련 업무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 입학 지원 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 목적 이외에 추가서류 등에 대한 요구 등을 통해 차별을 받아왔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의 학업시수 위반 등과 같은 교육지원에 있어서 보조학습기기, 보조인력 배치, 접근성 및 이동성 보장, 수화통역 등 의사소통 수단 등 편의제공 등에서 불이익을 받아왔다. 교육기관의 장은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 배치, 원활한 교수 또는 학습 수행을 위한 지도자료, 통학과 관련된 교통편의와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이동수단을 갖추는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10년도(2010.1.1~12.31) 교육부부분에서 장애인차별 진정사건의 유형을 <표 1>에서 살펴보면 수업·시험평가 편의제공 부분(12건, 21.8%)과 시설물 접근 및 이용, 기타(11건, 20%)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009년도에 비해 수업 등 교내활동 배제 부분에 대한 진정은 감소하였고, 시설물 접근, 편의제공 등의 부분에 대한 진정이 많이 접수 되었다.

<표 1> 2010년 교육영역에서의 진정사건 유형

(단위 : 건수 → 건, 비율 → %)

구 분	교육 영역								
	합 계	전입학 거부제한	시설물 접근 및 이용	수업·시험 평가 편의제공	수업 등 교내활동 배제	특수학급 설치	괴롭힘	기타	
2008	합계	58	3	16	20	11	4	4	-
	비율	100	5.2	27.6	34.5	18.9	6.9	6.9	-
2009	합계	49	2	16	8	13	1	3	6
	비율	100	4.0	32.6	16.3	26.5	2.0	6.1	18.3
	공공	28	2	7	4	8	1	2	4
	민간	21	0	9	4	5	-	1	2
2010	합계	55	4	11	12	6	4	7	11
	비율	100	7.3	20	21.8	10.9	7.3	12.7	20
	공공	35	-	2	6	5	4	7	11
	민간	20	4	9	6	1	-	-	-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2010).

2010년도(2010.1.1~12.31) 국가인권위원회의와 2010년도 (사)대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교육부분 주요 진정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 1 - 00고등학교 입학 거부 사건>

◦ 진정인은 정신장애 3급 장애인으로 00고등학교에 장애가 있어도 입학이 가능한지 문의하였으나 상담 직원은 장애가 있으면 입학이 어렵다는 답변을 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자 입학을 허용한 사례

<사례 2 - 00요리전문직업학교의 청각장애학생 지원미흡>

◦ 진정인은 청각1급 장애인으로 00요리전문학교에 개설된 재직자 훈련과정을 수화통역사를 대동하여 수강하고자 하였으나, 학교 측 수강접수 담당자가 “수화통역사도 교실 안에 들어가면 수강생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무조건 수강료를 내야한다.”고 하여 수강을 포기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자 진정인에게 사과하고 진정인과 수화통역사에 대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기로 한 사례

<사례 3 - 00요리전문직업학교의 청각장애학생 지원미흡>

◦ 진정인은 청각장애가 있는 대학생이어서 강의 시 문자통역, 수화통역 등의 편의제공과 학습도우미 등이 필요하지만 00대학교 측은 이러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고, 특수교육법에 규정된 장애학생지원센터도 설치하지 않고 있어 전반적인 학습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으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자 00대학교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통해 학기별로 장애학생 지원계획을 수립, 그 사실을 장애학생들에게 상세하게 알리고 장애학생의 개별적인 요구에 유연한 대응과 장애학생 당사자의 평가에

따라 지원방법을 변경할 수 있게 의견청취 기회 및 상담체계를 내실화하며 진정인들이 요청한 수업시간에 문자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사례

<사례 4 - 학교 입학거부>

◦ 내담자는 장애인인 상태에서 취학연령을 맞았고, 시골에서는 이런 장애인이 공부할 학교가 있는 것을 가르쳐 준 분도 없고, 마땅히 입학할 학교가 없는 걸로 알아서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다. 그렇게 시골에서 내내 집에서만 살다가 언니가 26세 때에 천안에 있으면서 ○○학교라는 학교에 입학을 시도했으나 그 때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입학을 거부하여 입학을 할 수 없었고, 이번에는 언니가 내담자를 대전으로 데려와 같이 살면서 조금만 배우면 의사소통이 원활할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꼭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시키고 싶다고 하였다. (대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례 5 - 장애인 시설환경 열악 등>

◦ 진정인은 00구 소재 장애인 생활시설(00의 집)의 생활교사인데, 시설장이 생활인의 금전을 착취하고, 병이 나거나 다쳐도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도록 방에 가두는 등의 학대행위를 하고 있다는 진정을 제기하였음.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시설장(피진정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장애수당 및 중증수당을 즉시 피해자들에게 반환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00시장 및 00구청장에게 피진정인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대하여 피진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사례

2. 정당한 편의제공에서의 차별적인 요소

장애인차별금지법 13조와 14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3조 4항의 경우, 학교책임자나 교사들은 실험 실습, 현장 견학, 수학여행에서 장애학생 동반을 꺼리는 경우가 있다. 그 이유는 만일의 사고 발생 시, 그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중증장애학생을 개인적으로 돌보아줄 인적 여건이 충분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학교에서는 특수교육보조원이나 공익요원을 학습보조요원으로 고용하기는 하지만 유사시 이들은 책임을 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의식도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법 13조 5항은 장애인의 특성과 능력에 맞는 진로교육을 제공하여야 하는데, 여전히 이를 무시하고 기존의 교육 시스템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겠다. 또한 실제 현장에서는 장애인과 장애 교육 관련자가 관리자나 교직원에게 무시당하는 경우도 볼 수 있으며, 특히 일반학교의 경우, 학교 책임자의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장애학생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둘째, 14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에 관한 내용이다. 1항 2호에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의 보조 인력의 경우, 아동 교육에 오히려 불이익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서 보조인력 배치 시 특수교육에 대한 자질 검증 후 배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3호에는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 불이익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보조도구 및 기기를 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완대체의사소통 도구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 거의 준비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5호에 규정하고 있는 적절한 교육 및 평가 방법 제공도 현실적이지 못하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아동의 교육적 진단을 위한 도구 개발이 미흡하여 체계적인 교육적 진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도구 개발과 이에 대한 교사 교육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또한 기타 장애인이 교육활동에 장애가 되는 편의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특수학교 등 특수교육 기관은 이에 대한 준비가 충족되고 있다고 판단되지만,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학생은 아직 충분하게 제공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4조 2항에는 장애인 교육을 위한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초 중등학교나 대학의 경우에는 독립된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하는데, 독립된 장애학생 지원부서가 없는 학교도 있고, 부서가 있더라도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담당자가 다른 업무와 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교육책임자가 관리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이다.

특히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학생이 더 큰 차별을 받고 있다고 여겨지고, 이에 대한 교육책임자의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일반학교 관리자들의 경우 장애인 관련법령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이에 대한 책임이 관리자에게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 장애인 관련법에 대한 홍보와 인식교육도 시급하다.

3. 모부성권차별금지의 차별적인 요소

장애인차별금지법 28조에서는 '교육책임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및 그 종사자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그 종사자 등은 부모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그 자녀를 구분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동안 부모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교육기관에서 자녀의 대한 정보, 학습 활동에 대한 정보, 부모교육에 대한 정보, 현장학습에 대한 활동, 부모 참여 프로그램 등을 공유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협력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부모와 자녀가 장애인 경우에는 의사소통의 문제, 부모와 자녀의 교육, 부모와 자녀와의 협동학습 프로그램 등의 개선이 요구된다.

4.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차별금지의 요소

장애인차별금지법 33조에서는 '교육기관, 사업장, 복지시설 등의 성폭력 예방교육 책임자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장애여성에 대한 성인식 또는 성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며, 그 내용이 장애여성을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교육기관 및 직업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은 장애여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가 장애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하며, 첫째, 학습활동의 기회 제한 및 활동의 내용을 구분하는 경우, 둘째, 취업교육 및 진로선택의 범위 등을 제한하는 경우, 셋째, 교육과 관련한 계획 및 정보제공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 넷째, 그 밖에 교육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여성을 대우하는 경우'를 말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35조에서는 '누구든지 장애아동에 대하여 교육, 훈련, 건강보호서비스, 재활서비스, 취업준비, 레크리에이션 등을 제공받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됨'과 '누구든지 장애아동을 의무교육으로 배제하여서는 안 됨'을 제시하고 있다.

III. 교육차별의 이행과제

1. 정당한 편의 제공에 대한 이행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14조 제1항에 교육책임자가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은,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 편의」에서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관련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제14조 제1항 제1호), 통학과 관련된 교통편의(시행령 제8조 제2호),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접근하는 데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이동수단(시행령 제8조 제3호) 등을 명시하고 있다. 교내 시설은 모든 학생들의 교육을 목적으로 지어진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완전한 이동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 장애아동의 교육활동에 우선 해결해야 하는 시설은, 교사(출입구, 복도, 엘리베이터 등), 교실(강의실 출입구, 게시물, 학습자료대 등), 화장실(출입구, 휠체어 회전 공간, 거울 등), 도서실(출입구, 서가의 폭, 도서대 높이 등), 식당(출입구, 식탁의 높이, 식판 등), 교정(운동장, 인도, 경사로 등) 등이다.

「교육서비스 참여관련」에서는 학습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학습보조기기의 대여 및 보조견 배치나 휠체어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의 확보(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장애인 및 장애인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 인력의 배치(법 제14조 제1항 제2호),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각종 장애인 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원활한 교수 또는 학습 수행을 위한 지도자료 등(시행령 제8조 제1호),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 학습 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법 제14조 제1항 제5호)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대상기관은 2009

년 4월 11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그 범위는 아래 <표 2> 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표 2>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대상기관

구분	2009년 4월 11일	2011년 4월 11일	2013년 4월 11일
보육시설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영유아 100인 이상 국공립·법인보육시설	국 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유치원	특수반설치 국 공립유치원	국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특수학교	국 공 사립 특수학교		
초중등교육기관	특수학급 설치 국 공립 각 급 학교	국 공 사립 각급학교	
고등교육기관		국 공 사립 대학교	
평생교육시설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그 외 1000㎡ 이상의 평생교육시설(원격대학은 2500㎡ 이상)
평가인정교육훈련시설			1000㎡ 이상의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1000㎡이상의 직업교육훈련기관
영재학교·영재교육원		영재학교·영재교육원	
교육연수기관			교원연수기관
공무원연수기관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전문교육훈련기관

이 외에도 교육환경에서 학습자료 접근, 정보 접근, 수화통역 등 의사소통 수단 등 편의제공, 교육기관의 장은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 배치 등, 모든 교육활동에 필요한 접근 및 활동이 갖추어져야 한다.

2. 비차별 교육의 이행

「장애인차별금지법」 13조에서는,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 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안 됨을 명시하고 있다. 또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편의제공,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안 되며,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책임자 및 교직원들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

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또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이하 "추가서류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추가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3. 교육기관에서 이행과제

1) 물리적 편의 지원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는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명시하고 있으며(장차법 13조 3호), 제14조에 명시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는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①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②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 인력의 배치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학교생활 편의 보장은 학업 외 서비스의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교내 이용불편 시설 모니터를 통한 관련부서 건의 및 해결, 보장구 대여 및 수리, 자원봉사자 연결을 통한 개인위생관리 지원, 컴퓨터 기능 학습 지원, 기초학력증진 강좌 운영, 휠체어 장애인의 통학 편의를 위한 등하교 지원 등이 강조되고 있다. 이 법안을 바탕으로 교육기관에서 최소 설치 및 이행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교수-학습 지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에서는, '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에서는, ①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건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②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③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 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④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교육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수

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⑥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의 설치 및 배치,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따라서 장애아동이 속한 교육기관에서는 음성이나 점자로 변환할 수 있는 형태의 파일 제공, 확대된 수업자료 제공, 수화통역 서비스 제공, 문자통역 서비스 제공, 장애아동에게 적합한 교육과정과 학습자료, 강의록 대필 서비스 제공, 대체평가 방식 제공(포트폴리오, 시간 연장, 구술, 과제제출, 개별문답 등), 낮낮이 조절이 가능한 책상, 팔걸이가 있는 의자, 그 밖에 수업 활동에 필요한 각종 학습보상기자재 등이 지원되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에서도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 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을 명시하고 있다. 평가에 좀 더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아동과 교사 사이에 평가에 대한 사전 논의를 거쳐 개개 아동의 요구가 수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즉 장애인들도 다른 아동과 동일한 교육적 기준이 적용 받는다고 하는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며, 수행평가에 있어서도 장애유형과 정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3) 교육보조인력 배치

교육환경 지원에 있어 장애인이 필요시 이동이나 일상생활, 학습활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조원이 지원되어야 하며, 장애인의 일상생활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상담교사가 배치되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에서도 '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 인력의 배치' 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보조원의 역할을 다양화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의 학교생활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방법'에 대한 연수를 받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현재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보조 인력으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3항과 제5항에 '보조인력'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들은 구분없이 '특수교육보조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보조원의 역할은 아동보호, 교내활동 지원, 통학보조, 아동의 신변처리 지원 등의 낮은 업무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법 14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조원의 역할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보조원의 사전교육을 통해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보조기기 조작, 점역, 음성전환문서 편집, 보조공학지원 등을 할 보조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4) 취업 및 진로 지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에서도, '교육책임자는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제시되어 있다. 졸업을 앞둔 장애인들을 위해 학교는 장애인 취업지원 전담기구를 활용하여 장애 인력을 수용하는 지역사회 사업체, 기업

의 취업 정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장애인 공무원 채용 정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노동부 등에서 장애인 취업과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취업 직종을 찾고 취업을 시켜야 한다. 장애인들의 취업 및 진로 지원을 위해 학교에서는 장애인 진로 지원 전담기구의 설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5) 장애아동과 장애여성 지원

장애인차별금지법 35조에서는 '누구든지 장애아동에 대하여 교육, 훈련, 건강보호서비스, 재활서비스, 취업준비, 레크리에이션 등을 제공받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됨'과 '누구든지 장애아동을 의무교육으로 배제하여서는 안 됨'을 제시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과 더불어 2008년도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시행은 우리 사회에서의 장애인교육권 보장에 실질적 보장에 대한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권 보장, 의무교육을 명시하고 있다. 이 법에서 제시한 교육권에 대한 구체적인 보장이 이행되기를 바란다.

장애인차별금지법 33조에서는 '교육기관, 사업장, 복지시설 등의 성폭력 예방교육 책임자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장애여성에 대한 성인식 또는 성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며, 그 내용이 장애여성을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기관 등에서는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법을 위해 성폭력 예방교육, 장애여성의 왜곡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이행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IV. 맺으며

지난 3년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과 더불어 특수교육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교육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실행한 조치들을 통해 장애인의 교육권 측면을 보장하려는 접근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도 '제3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교육과학기술부)'에 의거 교육환경에서 장애인 교육차별을 예방할 법령이나 정책 등 관련 제도의 개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장애아동의 교육적 차별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장애아동의 교육권 확대에 따른 학교의 시설·설비 및 학습지원과 평가방법 개선, 학교생활 적응 지원이 요구된다. 둘째, 장애아동 교육지원의 법제화에 따른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아동 지원부서 설치, 교육 편의 제공 등 장애아동의 고등교육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장애아동을 위한 물리적인 교육환경 조성고 교수·학습지원 제공, 대학교 학비지원 등 장애아동의 고등교육지원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교수·학습 및 시설·설비 확충을 위한 재정부담과 지원이 되어야 한다.

넷째, 장애아동 교육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각종 제도적, 실제적인 재정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야 한다. 현 시점까지의 지원체계 구축 수준이 학교가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한계라는 점을 인식하고, 국가차원의 재정확보와 지원만이 학교의 장애아동 교육 기회확대를 위한 편의시설 확보와 교사·학습지원 시스템 활성화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 아동을 비장애아동과 같은 학교에 입학시켰다고 해서 동등한 교육의 기회균등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장애인에게는 장애유형과 정도, 장애특성에 맞는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투자와 교육설비, 교육환경 구성, 교육과정 운영, 평가방법, 보조원지원 등의 개선을 통해 장애인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교육환경의 구축이 필요한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2010. 특수교육연차보고서.
- 교육과학기술부. 2008. 제3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 교육인적자원부. 2007. 특수교육 실태조사서.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국가인권위원회. 2010. 교육영역에서의 진정사건 유형별 사례(2010.1.1~12.31).
- 국가인권위원회. 2011. 2011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3주년 기념토론회.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2009. 장애인교육권 현황 및 향후과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2007. 장애인권리협약해설집.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김기룡. 2007. 장애우 교육에 새로운 주춧돌이 될 「장애인교육법」. 함께걸음: 5월호. 서울.
- 김정래. 2002. 아동권리향연. 서울: 교육과학사.
- 김주영 등. 2000. 특수학교의 재구조화 방안. 안산: 국립특수교육원.
- 사다토오 다케히로. 2002. 학교교육에서의 장애인 차별 금지. 장애아동 고등교육관련 자료. 61-79. 서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이현수. 2011.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3년 평가 및 실효적 이행을 위한 추진방향.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주년 기념 토론회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 이현수·이양희. 2011. 장애아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장애아동인권연구. 1(1).
- Rothstein L. 2002. *Disability Law: Cases, Materials, Probiems*. Leis: Nexis.
- Theresia Degener. 1995. *Disability Persons and Human Right: The Legal Framework, in Human Right and Disabled Persons*. Theresia Degener and Yolana Koster-Dreese(Eds). Martinus Nijhoff Publishers(London).
- Yell, M. L. 1998. *The Law and Special Education*. New Jersey: Prentice-Hall.
- 장애인교육권연대. <http://www.eduright.or.kr>

李炫洙: “청각장애학교 교육과정 실행 모형 개발 연구(2007)”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주요 논문으로는 관심분야는 장애인 인권, 장애인 교육 등이다. 주요 논문 및 연구로는 “발화속도와 독화의 상관연구”, “장애아동의 교육권에 관한 연구”, “7차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따른 청각장애학교유치부 교육과정 개발방안”, “장애대학생들의 학습권 현황과 개선방안” 외 다수가 있으며, 주요저서는 교육실습의 탐구(양서원), 예비특수교사를 위한 교육실습의 이론과 실제(양서원), 최신특수학교 교육과정(인포럼), 장애 아동부모교육(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외 다수가 있다 (mil37@youngdong.ac.kr).

투 고 일: 2011년 05월 15일

수 정 일: 2011년 06월 04일

게재확정일: 2011년 06월 10일

Educational Discrimination in the Law of Prevent Discriminating the Disabled and Suggesting the Future's Tasks

Hyon Su Lee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consider disabled children's educational discrimination in the law of prevent discriminating the disabled and suggest the future's tasks. The law which prevents discriminating the disabled has been fulfilled for 3 years, but if examining forms of petitions discriminating the disabled in the section of 2010's Education Ministry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it showed the part of convenience provision for classes-tests evaluation (12 matters, 21.8%), approach and using of facilities and others (11 matters, 20%) in order. The problems can be suggested as followed, focusing on prevention of educational discrimination and duty of providing proper convenience in Article 13 and 14 of the law which prevents discriminating the disabled. The first, the regulation for concrete fulfillment of proper convenience for roles of people in charge of education, their limitation of responsibilities, etc. must be suggested. The second, educational institution suggested in law must recognize that the standard establishing support system is a militation that school can fulfill by themselves for physical convenience support, teaching-studying support, supporter arrangement, employment and career support, etc. And, they also must secure support and finance of nation.

Key words: disabled, the law which prevents discriminating the disabled, educational discrimination, tasks